

# 2018 경북콘텐츠코리아랩 6차 마케팅 지원사업 (1인미디어 영상제작 지원) 참가기업 공고

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은 경북도내 6차산업 및 문화산업기업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「2018년도 경북콘텐츠코리아랩 6차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운영하고, 해당 사업의 참가기업을 선정 및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19년 2월 7일  
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장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18년도 경북콘텐츠코리아랩 6차 마케팅 지원사업  
(1인미디어 영상제작 지원)
  - 사업기간 : 2019. 2. 7.(목) ~ 2019. 3. 29.(금)
    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9. 2. 7.(목) ~ 2. 18.(월) 18:00까지
  - 사업지원방식 : 간접지원 방식
    - 간접지원 :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이 아닌 용역 제공자(수행기업)에게 지원금 직접 지급
  - 지원대상
    - 6차산업관련기업 :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한 농수축임특산물 관련중소(영리)기업
    - 문화산업관련기업 :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하고, 설립된지 5년미만 된 문화 산업 관련 영리기업으로써,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1호에 따른 “문화산업”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“문화상품”을 생산/제작하는 경북도내 소재 기업
- ※ 동일 과제로 1인미디어 영상제작 관련하여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, 타기관 또는 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(예정인) 경우 참여 불가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6.10., 2011.5.25., 2014.1.28., 2016.3.29.>

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
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

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
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
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
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
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2. "문화상품"이란 예술성·창의성·오락성·여가성·대중성(이하 "문화적 요소"라 한다)이 체화(體化)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·무형의 재화(문화콘텐츠,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)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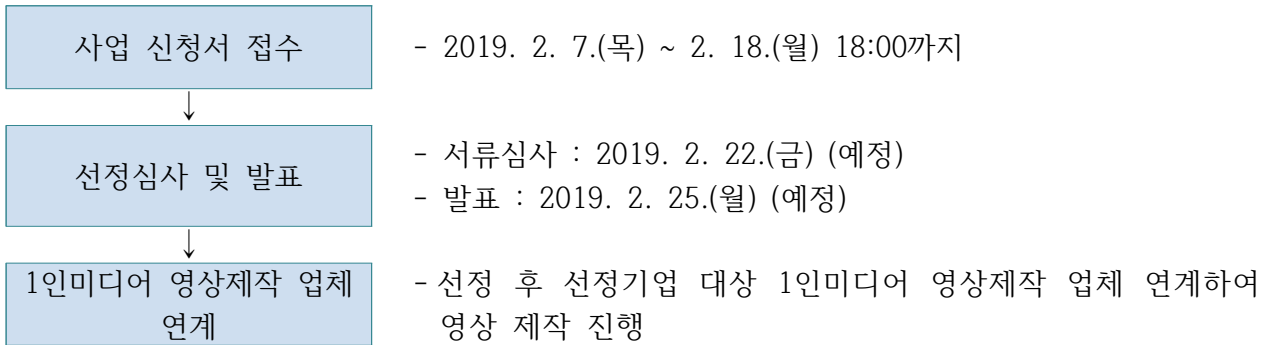
## 2.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: 업체 및 제품 홍보용 1인미디어 영상 제작
  - ※ 영상에 한정함(1인미디어 블로그, 포스터 등 지원 불가)
- 지원내용
  - 업체 홍보를 위한 1인미디어 영상제작 지원
  - 1인미디어 영상 및 마케팅 전략 컨설팅

## 3. 지원조건 및 지원절차

- 지원대상
  - 6차산업관련기업 :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한 농수축임특산물 관련중소(영리)기업
  - 문화산업관련기업 : 접수마감일 기준 주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하고, 설립된지 5년미만 된 문화산업 관련 영리기업으로써,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1호에 해당하고, 2호에 따른 “문화상품”의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
- 지원제한대상
  - 신청과제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(표절 포함)
  - 신청과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
  - 접수일 현재,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
  - 접수일 현재,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
  - 접수일 현재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  - 접수일 현재,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
  -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제재 조치 진행

### ○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

## 4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### ○ 접수방법 : 방문 제출(우편 제출 가능)

-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(<http://www.gbckl.kr>) → 소통마당 → 공지사항에서  
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※ 우편접수 시 접수기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되며, 우편배송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은  
접수기업에 있음

### ○ 제출서류
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(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로 첨부)
- 대표자 주민등록등본
- 사업자등록증(당해년도 발급분) 사본 1부(법인일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※ 법인 경우 대표자,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
-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(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)
- ※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(최근 3년간 자료 제출)
- 회사소개서 및 상품 설명자료(브로슈어, 포트폴리오 등) 1부

○ 문 의 처 : TEL. 054-840-7026

## 5. 평가기준

- 해당 제품의 경쟁력 평가
- 지원분야와의 적절성 평가
- 사업 확대 가능성 평가

## 6. 기타사항

- 과제 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관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함
- 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,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
-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「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」에 따름

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